

- (1)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주요 평가항목을 영업장 관리, 제조시설·설비 관리, 검사관리 등 식품안전 관련 사항 등의 세부평가항목을 정함.

다. 위생수준 안전평가 실시 대상 업체 선정

- (1) 위생수준 안전평가 대상 업체
- 어묵류,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 음료, 레토르트 식품 및 배추김치를 생산하는 HACCP 적용업체
 -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영업자로서 과자류, 면류, 음료류 등을 생산하는 영업자
- (2) 연도별로 순차적 평가, 같은 영업자 3년 주기로 실시

라. 위생수준 안전평가자 선정

- (1)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평가자 후보군을 구성
- (2) 안전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안전평가자 후보군 중 6인 이내의 안전평가자를 선정하여 이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식약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위생수준 안전평가 실시 및 등급구분

- (1) 안전평가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 및 안전평가자는 평가대상 업체의 서류, 시설·설비의 확인 및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
- (2) HACCP 적용업체의 경우 조사·평가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식약청은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AAA등급(95점 이상 : 우수등급), AA등급(90점이상~95점미만), A 등급(85점 이상~90점미만)으로 구분

바. 우수등급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식약청 홈페이지 3개월 이상 게재함.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08호, 2009. 7. 29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에 식품 원료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식품 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의 인정대상 중 식품원료 추가(신설)

- (1) 국내에서 새로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
하고자 하는 농·축·수산물 및 미생
물 등
- (2)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원료를 추출
· 농축·분리·배양 등의 방법으로
얻은 신규물질

나. 인정 검토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로 설정

다. 기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청서, 인정서, 및 인정사항 변경신청
서 와 작성요령 신설(내용 생략)

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17호, 2009. 8. 5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환경을 마련하여 어린이의 바른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함
(안 제2조)

- (1)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정서저해 식품이 유통될 우려가 있으
므로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 등 금지

가 필요함.

- (2) 정서저해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를 규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유통을 금지함.
- (3) 어린이 기호식품의 건전한 유통 환경
을 유도하여 건강한 어린이의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